|  |  |  |
| --- | --- | --- |
| **수출입공산품 리스크관리방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령제188호  <수출입공산품 리스크관리방법>은 2017년 2월 21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기에 이를 공표하며,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17년 3월 6일  제1장 총칙  제1조 수출입공산품 품질안전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무역편리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수출입공산품의 리스크 정보수집, 리스크 정보평가, 리스크 경보 및 즉각적 대응과 감독관리 등 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본 방법은 식품, 화장품, 동∙식물제품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리스크 즉, 품질안전리스크는 수출입공산품이 인류건강과 안전, 동∙식물 생명과 건강, 환경보호, 국가안전 및 수출입무역 관련 각방의 합법적 권익에 대하여위해를 초래할 가능성과 정도를 말한다. 본 방법에서 일컫는 리스크 정보는 수출입공산품이 안전, 위생, 환경보호, 건강, 반(反)사기 등 측면에서 형성되거나 또는 형성될 수 있는 체계성, 지역성 위해 또는 영향 및 상술한 위해 또는 영향을 제한,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해 수집, 평가,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수출입공산품 품질안전 분야의 정보를 말한다.  본 방법에서 일컫는 생산경영자는 수입공산품의 수화인 그 대리인, 수출공산품의 생산기업, 송화인 및 그 대리인 등을 의미한다.  제4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은 전국의 수출입공산품 리스크 정보수집, 리스크 정보평가, 리스크경보 및 즉각적 대응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출입경(국)검사검역부처(이하 ‘검사검역부처’)가 관할지역 내 수출입공산품 리스크 정보수집, 리스크 정보평가, 리스크경보 및 즉각적 대응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국가질검총국은 규정된 자질조건에 부합하는 기술기구를 지정하여 수출입공산품 리스크정보 국가모니터링업무(이하 ‘국가모니터링센터’)를 담당하도록 하여, 특정시기 및 특정지역내의 특정 공산품에 대한 리스크 정보의 수집 및 평가를 진행하고, 또한 상응하는 리스크 처리 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제6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공산품 품질안전 리스크경보플랫폼(이하 ‘리스크경보플랫폼’)을 구축하고, E-CIQ주요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보화기술을 응용하여 수출입공산품 리스크 정보를 수집하고 발표한다.  제7조 수출입공산품 생산경영자는 수출입공산품 리스크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수출입공산품 품질안전을 보증하고, 사회적 감독을 받아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장 리스크정보수집  제8조 수출입공산품 리스크 정보의 출처는수출입검사 감독관리정보, 수출입인증 감독관리정보, 검사검측기구가 제공한 정보, 해외에서 통보한 리콜정보, 수출반송정보, 샘플링 검사정보, 각급 정부부처 및 업계협회가 통보한 정보, 해외 정부부처가 통보한 정보, 병원상해 보고정보, 교통사고 정보, 소방사고 정보, 제품안전사고 정보, 기술법규표준 정보, 매체여론 정보,생산경영자 보고정보,소비자 신고정보 및 기타 리스크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제9조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이 국가질검총국, 검사검역부처 또는 국가모니터링센터에 실명으로 수출입공산품 관련 리스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수출입공산품의 생산경영자는 리스크 정보 보고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품에 리스크가 있음을 발견할 경우, 즉시 국가질검총국, 검사검역부처 또는 국가모니터링센터에 관련 리스크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검측기구가 수출입공산품 검사검역업무를 전개함에 있어 리스크 보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수출입공산품에 리스크가 있음을 발견하면 즉시 국가질검총국, 검사검역부처 또는 국가모니터링센터에 관련 리스크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가질검총국, 검사검역부처와 국가모니터링센터는 수집한 리스크 정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규정에 따라 리스크 경보플랫폼에 입력한다.국가질검총국과 검사검역부처는 규정된 자질조건에 부합하는 기술기구(이하 ‘기술기구’)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리스크 정보평가  제12조 국가질검총국 및 검사검역부처는 기술기구에 위탁하거나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여 수출입공산품 리스크 정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 기술기구 및 전문가그룹은 규정 시간내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을 활용하여 리스크 평가업무를 종료하여야 하며, 리스크 평가결과를 도출하여 서면보고서를 발급한다.  서면 보고서는 리스크 평가의 방법, 리스크 유형,등급, 위해, 범위, 잔여 리스크, 리스크 처리 건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 제품 리스크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경우, 평가를 이행한 국가질검총국, 검사검역부처 또는 국가모니터링센터가 적시에 조직하여 제품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4장 리스크 처리  제15조 국가질검총국 또는 검사검역부처는 직책에 따라 리스크 평가보고에 대한 연구와 판단을 진행하고, 연구와 판단결론에 근거하여 리스크 처리 결정을 내린다. 리스크 경보조치와 즉각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확정하여 실시한다.  제16조 리스크 경보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1)관련 검사검역부처에 리스크 경보 통보를 발표한다.  (2) 생산경영자, 관련기구에 리스크 경보 통고를 발표하고, 즉각적인 조치방안을 알려주거나 통지하여 위험을 제거 또는 경감시킨다.  (3) 리스크 경보공고를발표할 경우,수출입공산품의 리스크와 위해에 대한강제성 조치를 확정하여 소비자와 사용자가 수출입공산품의 리스크와 위해를 경계하도록 알린다.  제17조 즉각적 대응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1)검사감독관리 모델을 조정한다.  (2)생산경영자가 리스크가 존재하는 수출입공산품에 대해 반송 또는 소각,수출입 중지, 판매 및 사용 중지 또는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한다.  (3)유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리스크가 존재하는 수출입공산품을 압류하거나 압수한다.  (4)특정기간 동일류 제품 및 관련업종 또는 관련 구역내 제품의품질 안전상황을 조사한다.  (5)유관부처와 기구에 통보하고, 협동 처리방안을 제안한다.  제18조 긴급한 상황인 경우, 국가질검총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참조하여, 확정적이지 않은 수출입공산품 리스크에 대해서는 본 방법 제16조 및 17조 규정에 따라 리스크 경보 또는 즉각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리스크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질검총국 또는 검사검역부처는 즉시 조치된 리스크 경보 및 즉각적 대응조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20조 검사검역부처는 조치한 리스크 경보와 즉각적 대응 조치보고를 상급 검사검역부처에 비안(등기)하여야 한다.  제21조 리스크 경보와 적극적 대응조치 규정에 실시기한이 있을 경우, 기간 만료 후 리스크 경보와 즉각적 대응 조치가 자동 해제된다.  리스크 경보와 즉각적 대응 조치 실시기한 내, 리스크가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적정한 정도까지 하락할 경우, 국가질검총국 또는 검사검역부처는 주동적으로 또는 생산경영자의신청에 근거하여 리스크 경보와 즉각적 대응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생산경영자가 리스크 경보와 즉각적 대응조치의 해제를신청할 때에는,리스크 감소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부처는 제출한 리스크 감소 보고서의 진실성 및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생산경영자가 그 제품에 이미 리스크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하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리스크 감소조치를 실시한다.  (2)즉시 이해관련자에게 진실된 상황과 채택된 리스크 감소 조치를 통보한다.  (3)즉시 국가질검총국 또는 검사검역부처에 채택한 리스크 감소 조치 및 실시결과를 보고한다.  (4)국가질검총국 또는 검사검역부처가 진행하는 리스크 정보 조사와 리스크 감소 조치의 감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23조 국가질검총국 또는 검사검역부처는 기술기구에 위탁하거나 또는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1) 이미 취한 리스크 경보와 즉각적 대응조치  (2) 생산경영자가 취한 리스크 감소 조치  제24조 수출입공산품에 리스크가 존재하였으나 생산경영자가 즉시 감소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질검총국 또는 검사검역부처가 그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에 대한 책임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  검사검역부처가 적시에 수출입공산품의 체계성 리스크를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관할 내 리스크를 적시에 감소시키지 못하는 경우, 국가질검총국 또는 상급검사검역부처가 그 주요 책임자에 대한 책임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  제25조 수출입공산품 리스크 경보 및 즉각적 대응관리업무는 비밀유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외적 발표가 필요한 정보는 국가질검총국 규정을 준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6조 국가질검총국, 검사검역부처와 국가모니터링센터는 수령한 수출입공산품 리스크 정보에 대한 분류, 보관 및 통계를 진행하고, 리스크 정보의 파일관리업무를 이행한다.  수출입공산품 리스크 정보파일의 보존기한은 3년이다. 중대안건 및 전형적 사례 등 사항과 관련된 파일은 장기 또는 영구 보존한다.  제6장 법적책임  제27조 생산경영자가 본 방법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가질검총국 및 검사검역부처가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처벌할 수 있다.  (1)그 제품에 리스크가 존재함을 인지하였으나 주동적으로 국가질검총국 및 검사검역부처에 관련정보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또는 은닉 및 누락보고가 존재할 경우  (2) 국가질검총국 또는 검사검역부처가 실시하는 리스크경보와 즉각적 대응조치 또는 리스크 감소 조치에 대한감독관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3)적시에 반송 및 소각, 수출입중지, 판매와 사용 중지및 리콜 등 리스크 감소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또는 조치가 부적절하여 리스크를 유효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4) 이해관련자에게 진실된 상황 및 리스크 감소 조치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제28조 기술기구 및 전문가그룹은 객관적이며진실하고 정확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보고서 또는 왜곡된 평가결과를 제공한 기구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 책임을 추궁한다.  제29조 검사검측기구는 진실하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은닉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추궁한다.  제30조 검사검역부처 근무직원은 공정하게 법률을 집행하고 직책을충실이 이행하여야 한다.직권남용, 직무유기 및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없다. 법률 위반 및 직무상 과실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 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  제31조 본 방법은 국가질검총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제32조 본 방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进出口工业品风险管理办法**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令第188号  《进出口工业品风险管理办法》已经2017年2月21日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7年4月1日起施行。  局 长  2017年3月6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加强进出口工业品质量安全风险管理，促进贸易便利化，根据《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及其实施条例等法律法规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对进出口工业品的风险信息收集、风险信息评估、风险预警及快速反应和监督管理等工作。  本办法不适用于食品、化妆品、动植物产品的风险管理工作。  第三条 本办法所称风险即质量安全风险，是指进出口工业品对人类健康和安全、动植物生命和健康、环境保护、国家安全以及对进出口贸易有关各方合法权益造成危害的可能和程度。本办法所称风险信息，是指进出口工业品在安全、卫生、环境保护、健康、反欺诈等方面形成或者可能形成的系统性、区域性危害或者影响，以及为限制、减少或者消除上述危害或者影响需要进行收集、评估、处置的进出口工业品质量安全方面的信息。  本办法所称生产经营者，是指进口工业品的收货人及其代理人，出口工业品的生产企业、发货人及其代理人等。  第四条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以下简称国家质检总局）统一管理全国进出口工业品风险信息收集、风险信息评估、风险预警及快速反应工作。  国家质检总局设在各地的出入境检验检疫部门（以下简称“检验检疫部门”）负责辖区内进出口工业品风险信息收集、风险信息评估、风险预警及快速反应工作。  第五条 国家质检总局指定符合规定资质条件的技术机构承担进出口工业品风险信息国家监测工作（以下简称国家监测中心），对特定时段、特定区域内的特定工业品进行风险信息的收集、评估，并提出相应的风险处置建议。  第六条 国家质检总局建立进出口工业品质量安全风险预警平台（以下简称风险预警平台），依托E－CIQ主干系统，应用信息化技术，收集和发布进出口工业品风险信息。  第七条 进出口工业品生产经营者应当建立进出口工业品风险追溯体系，保证进出口工业品质量安全，接受社会监督，承担社会责任。  第二章 风险信息收集  第八条 进出口工业品风险信息的来源可以包括：进出口检验监管信息、进出口认证监管信息、检验检测机构提供的信息、境外通报召回信息、出口退运信息、抽查检验信息、各级政府部门及行业协会通报信息、境外政府部门通报信息、医院伤害报告信息、交通事故信息、消防事故信息、产品安全事故信息、技术法规标准信息、媒体舆情信息、生产经营者报告信息、消费者投诉信息以及其它风险信息。  第九条 任何组织或者个人可以向国家质检总局、检验检疫部门或者国家监测中心实名提供有关进出口工业品风险信息。  第十条 进出口工业品的生产经营者应当建立风险信息报告制度。发现产品存在风险时，应当及时向国家质检总局、检验检疫部门或者国家监测中心报告相关风险信息。  检验检测机构开展进出口工业品检验检测业务的，应当建立风险报告机制。发现进出口工业品存在风险时，应当及时向国家质检总局、检验检疫部门或者国家监测中心报告相关风险信息。  第十一条 国家质检总局、检验检疫部门和国家监测中心对收集的风险信息进行调查核实，按照规定录入风险预警平台。国家质检总局和检验检疫部门可以委托符合规定资质条件的技术机构（以下简称技术机构）实施。  第三章 风险信息评估  第十二条 国家质检总局、检验检疫部门可以委托技术机构或者组建专家小组对进出口工业品风险信息进行评估。  第十三条 技术机构、专家小组应当在规定时间内运用国际通行的规则完成风险评估工作，得出风险评估结果，出具书面报告。  书面报告应当包括：风险评估的方法、风险类别、等级、危害、范围、残余风险、风险处置建议等内容。  第十四条 产品风险发生重大变化时，做出评估的国家质检总局、检验检疫部门或者国家监测中心应当及时组织对产品风险进行重新评估。  第四章 风险处置  第十五条 国家质检总局或者检验检疫部门依照职责对风险评估报告进行研判，根据研判结论作出风险处置决定。需要采取风险预警措施和快速反应措施的，确定并实施相应的措施。  第十六条 风险预警措施包括：  （一）向相关检验检疫部门发布风险警示通报；  （二）向生产经营者、相关机构发布风险警示通告，提醒或者通知其及时采取措施，消减风险；  （三）发布风险警示公告，确定对进出口工业品的风险和危害的强制性措施，提醒消费者和使用者警惕涉及进出口工业品的风险和危害。  第十七条 快速反应措施包括：  （一）调整检验监管模式；  （二）责令生产经营者对存在风险的进出口工业品实施退运或者销毁、停止进出口、停止销售和使用或者召回；  （三）按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对存在风险的进出口工业品实施查封或者扣押；  （四）组织调查特定时间段中，同类产品、相关行业或者关联区域内的产品质量安全状况；  （五）通报有关部门和机构，并提出协同处置的建议。  第十八条 紧急情况下，国家质检总局可以参照国际通行做法，对不确定的进出口工业品风险，按照本办法第十六、十七条规定采取风险预警或者快速反应措施。  第十九条 当风险发生变化时，国家质检总局或者检验检疫部门应当及时调整所采取的风险预警和快速反应措施。  第二十条 检验检疫部门应当将采取的风险预警和快速反应措施报告上一级检验检疫部门备案。  第二十一条 风险预警和快速反应措施规定有实施期限的，期满后风险预警和快速反应措施自动解除。  风险预警和快速反应措施实施期限内，风险已经不存在或者已经降低到适当程度时，国家质检总局或者检验检疫部门应当主动或者根据生产经营者的申请解除风险预警和快速反应措施。  生产经营者申请解除风险预警和快速反应措施时，应当提交风险消减评价报告。接受申请的部门应当对提交的风险消减报告的真实性、符合性进行评估。  第二十二条 生产经营者明知其产品已经或者可能存在风险时，应当履行以下义务：  （一）实施风险消减措施；  （二）及时向利益相关方通报真实情况和采取的风险消减措施；  （三）及时向国家质检总局或者检验检疫部门报告采取的风险消减措施及实施结果；  （四）积极配合国家质检总局或者检验检疫部门进行的风险信息调查和风险消减措施的监督。  第五章 监督管理  第二十三条 国家质检总局或者检验检疫部门可以委托技术机构或者组建专家小组对下列事项进行评估：  （一）已采取的风险预警和快速反应措施；  （二）生产经营者采取的风险消减措施。  第二十四条 当进出口工业品存在风险，生产经营者未及时采取消减措施的，国家质检总局或者检验检疫部门可以对其法定代表人或者主要责任人进行责任约谈。  检验检疫部门未及时发现进出口工业品系统性风险，未及时消除辖区内风险的，国家质检总局或者上级检验检疫部门可以对其主要负责人进行责任约谈。  第二十五条 进出口工业品风险预警及快速反应管理工作应当遵守保密规定。需要对外发布的信息应当按照国家质检总局相关规定予以公布。  第二十六条 国家质检总局、检验检疫部门和国家监测中心对收到的进出口工业品风险信息进行分类、归档、统计，并做好风险信息的档案管理工作。  进出口工业品风险信息档案保存期限为3年。涉及重大案件、典型案例等事项的档案，做长期或者永久保存。  第六章 法律责任  第二十七条 生产经营者违反本办法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国家质检总局、检验检疫部门可以责令其改正；拒不改正，且造成严重后果的，可以处3万元以下的罚款：  （一）明知其产品存在 风险未主动向国家质检总局、检验检疫部门报告相关信息，或者存在瞒报、漏报的；  （二）不配合国家质检总局或者检验检疫部门实施风险预警和快速反应措施或者对其风险消减措施实施监督管理的；  （三）未及时实施退运、销毁、停止进出口、停止销售和使用、召回等风险消减措施或者因措施不当未有效控制风险的；  （四）未向利益相关方通报真实情况以及风险消减措施的。  第二十八条 技术机构、专家小组应当提交客观、真实、准确的评估报告，对提供虚假报告或者篡改评估结果的机构或者个人，依法追究责任。  第二十九条 检验检测机构应当出具真实客观的报告。对提供虚假信息或者瞒报信息的机构，依法追究责任。  第三十条 检验检疫部门工作人员应当秉公执法、忠于职守，不得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对违法失职的，依法追究责任。  第七章 附 则  第三十一条 本办法由国家质检总局负责解释。  第三十二条 本办法自2017年4月1日起施行。 |